

미국 이민자 노동 권리 완전 가이드

Immigrant Workers' Rights — Complete Guide
한국어 / Korean · HAVEN RIGHTS 제공

본 가이드는 한인 노동자를 위한 미국 노동법 참고 자료입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

핵심 원칙 / Core Principle

미국 연방 노동법(FLSA, Title VII, OSHA, NLRA 등)은 근로자의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. / U.S. federal labor laws protect ALL workers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.

서류미비 노동자(undocumented workers)도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:

- 최저임금 받을 권리 / Right to minimum wage
- 초과근무 수당 (시급의 1.5배) 받을 권리 / Right to overtime pay (1.5× regular rate)
-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 (OSHA) / Right to a safe workplace
- 차별받지 않을 권리 (Title VII 등) / Right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
- 노동조합 결성·가입 권리 (NLRA) / Right to organize
- 부당 해고 시 구제받을 권리 / Right to remedies for wrongful termination

다만 서류미비 노동자에게 제한되는 구제:

- 복직(reinstatement) 구제는 제한 — 실제 근무가 연방 이민법에 저촉되기 때문 / Reinstatement may be limited due to IRCA
- 단, 해고 전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 가능 / Back pay for work actually performed remains recoverable

1. 신분별 권리 차이 / Rights by Immigration Status

H-1B (전문직 비자) / H-1B Specialty Occupation

- 스폰서 회사에서만 근무 가능 / Work only for sponsoring employer
- 다른 회사로 이직 시 H-1B 트랜스퍼 필요 / H-1B transfer required to change employers
- 해고 시 60일 grace period 내에 신분 전환 또는 출국 / 60-day grace period after termination
- 임금은 공인된 LCA 임금 이상이어야 함 / Wages must meet LCA prevailing wage
- 회사가 귀국 항공료 부담 의무 (해고 시) / Employer must pay return transportation
- 법적 권리 행사가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음 / Exercising legal rights does not affect status

L-1 (주재원 비자) / L-1 Intracompany Transferee

- 모회사-자회사 관계 내에서만 유효 / Valid only within the corporate family
- 회사 구조 변경 시 신분 즉시 영향 / Corporate restructuring can affect status
- 해고 시 60일 grace period / 60-day grace period after termination

E-2 (투자 비자) / E-2 Treaty Investor

- 투자자 본인 및 "핵심 인력"에게만 발급 / Issued to investor and essential employees
- 한국 국적 필수 / Korean nationality required
- 회사 해체 시 신분 즉시 무효 / Status void upon company dissolution

영주권자 (Green Card) / Lawful Permanent Resident

- 미국 시민과 거의 동일한 노동권 / Nearly identical rights to U.S. citizens
- 해고는 신분에 영향 없음 / Termination does not affect permanent residency
- 일부 공직(연방 공무원 등)은 시민권 필요 / Some federal jobs require citizenship

서류미비 근로자 / Undocumented Worker

- 위 "핵심 원칙" 참조 — 노동법상 모든 권리 보유 / See core principle — full labor law protection
- 일부 구제 수단 제한 (reinstatement 등) / Limited reinstatement remedy
- EEOC·DOL 신고는 ICE와 별개 절차 / EEOC/DOL filings are separate from ICE

2. 모든 근로자 공통 권리 / Universal Worker Rights

최저임금 / Minimum Wage (2025-2026)

- 연방 최저임금: \$7.25/시 (변경 없음 2009년부터) / Federal: \$7.25/hr unchanged since 2009
- CA: \$16.50/시 (도시별 더 높음 — LA, SF \$18+) / California: \$16.50+ (higher in cities)
- NY: \$16.50/시 (NYC·Long Island·Westchester) / New York: \$16.50 in NYC metro
- TX·GA: 연방 기준 \$7.25/시 / Texas & Georgia: federal \$7.25

초과근무 / Overtime

- 주 40시간 초과분 = 시급의 1.5배 / Hours over 40 per workweek = 1.5× rate
- CA: 일 8시간 초과 1.5배, 12시간 초과 2배 / CA: 1.5× over 8 hrs/day, 2× over 12
- AK·NV 등 일부 주도 일 단위 초과근무 적용 / Other states have daily overtime
- "Exempt" 분류 직원은 예외 — 조건 엄격 / Exempt status has strict criteria

식사·휴식 / Meal & Rest Breaks

- 연방법: 식사/휴식 의무 없음 / No federal requirement
- CA: 5시간당 30분 식사, 4시간당 10분 휴식 (유급) / California: 30-min meal per 5 hrs; 10-min rest per 4 hrs
- NY: 6시간당 30분 식사 / New York: 30-min meal per 6 hrs

휴가 / Leave

- 연방법: 유급휴가 의무 없음 / No federal paid vacation requirement
- 주별 유급 병가 (CA, NY, NJ, CO 등) / State paid sick leave in CA, NY, NJ, CO
- FMLA: 50인 이상 사업장 연 12주 무급 가족·의료 휴가 / FMLA: 12 weeks unpaid at 50+ employers
- CA·NY·WA·NJ: 유급 가족 휴가 (PFL) / Paid family leave in CA, NY, WA, NJ

산업재해 / Workers' Compensation

- 모든 주에서 강제 가입 / Mandatory in all states
-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/ Available regardless of status
- 업무 중 부상·질병 모두 해당 / Covers injuries and illnesses

실업급여 / Unemployment Insurance

- 서류미비 근로자는 신청 불가 / Undocumented workers cannot claim
- 영주권자·취업비자 소지자는 가능 / LPRs and work-authorized can claim
- 근로 자격 유지 중이어야 함 / Must maintain work authorization

3. 이민 신분 악용 위협 대응 / Responding to Immigration-Based Threats

아래와 같은 고용주 위협은 위법이며 Title VII·IRCA·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:

- × "신고하면 ICE에 신고하겠다" / Reporting to ICE if you file a complaint
- × "너희 나라로 돌려보내겠다" / Threats of deportation
- × "비자 스폰서십을 취소하겠다" / Retaliatory visa revocation
- × "영주권 신청을 막겠다" / Blocking green card sponsorship
- × "소셜 카드가 없으면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" / Denying minimum wage over status
- × "계약직이니까 초과근무 수당 없다" (실질 정직원인 경우) / Misclassifying to deny OT

대응 방법 / Response Steps

1. 즉시 글로 기록 — 날짜, 시간, 발언, 목격자 / Document immediately
2. 문자·이메일 스크린샷 보관 / Screenshot written threats
3. 녹음 (주별 녹음법 확인: CA·NY 일방 동의, WA·IL 양방 동의) / Record if state law permits
4. EEOC 또는 DOL 신고 (보복 차별로 성립) / File with EEOC or DOL — threats are retaliation
5. 필요 시 U-visa/T-visa 구제 검토 / Consider U-visa/T-visa if eligible

4. 신고 시 이민 신분 보호 / Immigration Protections When Reporting

- DOL과 ICE는 별개 기관이며 MOU로 정보 공유 금지 / DOL and ICE are separate — MOU prohibits info sharing during labor cases
- EEOC도 신분 증명서 제출 의무 없음 / EEOC does not require status documentation
- U-visa: 특정 범죄 피해자(가정폭력·인신매매·착취 등)로서 수사 협조 / U-visa for crime victims cooperating with authorities
- T-visa: 인신매매 피해자 / T-visa for human trafficking victims

5. 한인 자주 묻는 질문 / Korean FAQ

Q1. 한인 식당에서 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, 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?

A. 예. 현금 지급이더라도 임금 기록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. 본인의 근무시간 기록, 수령 달력, 증인 진술로 체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 DOL 신고 절차는 동일합니다.

Q2. H-1B인데 회사가 초과근무를 수당 없이 시킵니다.

A. H-1B는 일반적으로 "exempt" 분류되어 초과근무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. 단, 직책이 실질적으로 전문직 업무가 아니라고 입증되면 non-exempt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. LCA 임금 기준 미달 여부도 확인하세요.

Q3. 사장이 "너 돌려보낸다"고 협박했습니다.

A. 즉시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, EEOC에 국적 차별 + 보복(retaliation)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 구체적 상황에 따라 T-visa/U-visa 구제도 고려하세요.

Q4. 서류미비인데 임금 체불이 \$10,000입니다. 받을 수 있나요?

A. 예. DOL에 신고하면 DOL이 이민 신분 확인 없이 조사합니다. 실제 지급받은 판례 다수 있습니다.

Q5.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.

A. NLRA 위반입니다. 이민 신분 불문하고 NLRB(1-844-762-6572)에 신고 가능. 복직 구제는 제한될 수 있으나 back pay 청구는 가능합니다.

Q6. 퇴사 시 "소송 안 하겠다"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.

A. 이미 발생한 차별·체불에 대한 소송권은 공공질서상 사후 포기(release)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서명하세요.

6. 주요 연락처 / Key Contacts

연방 기관 / Federal Agencies

- DOL 임금시간국: 1-866-487-9243 (한국어 통역)
- EEOC: 1-800-669-4000 (한국어 통역)
- OSHA: 1-800-321-6742
- NLRB: 1-844-762-6572

이민 구제 / Immigration Resources

-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: nilc.org
- AILA (이민 변호사 협회): aila.org
- CLINIC Legal: cliniclegal.org

한인 지원 / Korean Community Resources

- KFAM (Los Angeles): (213) 235-4800
- KAFSC (New York): (718) 460-3800
- MinKwon Center (NY): (718) 460-5600
- CPACS (Atlanta): (770) 936-0969
- Korean Resource Center: krcla.org

HAVEN RIGHTS

- 전화: 1-800-HAVEN-US
- 이메일: help@havenrights.org
- 웹사이트: havenrights.org

© HAVEN RIGHTS — 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